공 개

의안번호	제 259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9. 16. (제16차)

의결사항

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※ 본 안건은 보고안건 제54호(2022년)에 근거하여 조치대상자 실명 공개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9. 16.

1. 의결주문

□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㈜엔바이오니아 주식등에 대한 지분공시 조사(조사기간 : 2026.3.19. ~ 2026.7.24.) 결과 발견된 한정철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○ 한정철은 2021.12.16. ○○(前 임원)으로부터 ㈜엔바이오니아 주식 249,990주를 대물변제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본인 보유 주식등에 합산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, 2021.12.16. ~ 2022.7.21.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5회 위반하였음

4. 조치의견

□ 한정철 : 과징금 600,000원 부과

○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5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1>

□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(舊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4항 제1호, 제147조 제1항),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[별표 제3호] 2. 나. (1), 3.

나. 한정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붙임2>

(별지)

한정철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한정철의 舊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한정철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징금 6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한정철 [㈜엔바이오니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]

- 주민등록번호 : □□□□□□-□□□□□□□

- 주소 : ◇◇◇ ◇◇◇ ◇◇◇ ◇◇◇◇◇ ◇◇◇, ◇◇◇◇◇ ◇◇◇◇

□ 조치이유

○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

- 한정철은 2021.12.16. ○○(前 임원)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하여 ○○이 소유한 ㈜엔바이오니아 주식 249,990주를 대물변제 받을 권리를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본인 보유 주식등에 합산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, 2021.12.16. ~ 2022.7.21.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(변동)를 총 5회 위반(최고위반비율 : 1.43%)한 사실이 있음

<붙임1>

관계법규

□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47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)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(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을 대량보유(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)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 이내에 그 보유상황, 보유 목적(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),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,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(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(임원의 선임·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,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)의 10만분의 1 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47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□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[별표 제3호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2.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

가. 동기·결과의 판단요소

[위법행위 동기]

(1) 고 의 :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
(2) 중과실 :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
(3) 과 실 :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

[법규위반 결과]

· 증권·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, 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,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.

(1) 사회적 물의야기
(2) 중대
(3) 경미

나. 판단기준<개정 2011.11.4.><개정 2013.9.17.><개정 2021.4.6.>

동기 / 결과	고의	중과실*		과실**
		공시위반	보고의무위반	
사회적물의야기	A	C	D	D
중 대	B	C	D	D
경 미	D	D	D	E

*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.
** 불공정거래의 경우(위법한 공매도 제외) 중과실을 포함한다.

(1)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.

동기 / 결과	고의		과실(중과실)	
	조사* 적발	자진** 보고	조사* 적발	자진** 보고
사회적물의야기	A	B	C	C
중 대	B	C	C	C
경 미	D	D	D	E

* 지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.
** 지분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.

3. 조치기준<개정 2011.11.4><개정 2015.7.14.><개정 2021.4.6.><개정 2021.5.12.><개정 2025.4.23.><개정 2025.12.30.>

<table>
<tr><td>판단결과</td><td colspan="2">조치기준</td></tr>
<tr><td>A</td><td>고 발</td><td rowspan="2">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. 및 6의2.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(과징금)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, 예외적으로 A(고발) 또는 B(수사기관 통보) 조치를 병과. 또한,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C(과징금)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필요시 A(고발) 또는 B(수사기관 통보) 조치를 병과. 미공개정보·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, 시세조종행위,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C(과징금)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.</td></tr>
<tr><td>B</td><td>수사기관 통보</td></tr>
<tr><td>C</td><td colspan="2">과징금</td></tr>
<tr><td>D</td><td colspan="2">경 고</td></tr>
<tr><td>E</td><td colspan="2">주 의</td></tr>
<tr><td>비고</td><td colspan="2">① 시세조종행위, 미공개정보 이용행위,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,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.
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
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(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)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
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
⑤ 동일·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
⑥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제한명령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.
⑦ 자기주식 취득·보유·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</td></tr>
</table>

<붙임2>

한정철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(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[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4항]

Ⅱ. 산정결과

□ **과징금 부과결정액 : 600,000원**

(단위: 원)

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대량보유(변동) 보고의무 위반	600,0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	기업공시국
연 락 처	02-2100-2688	02-3145-8486